

지원금 경쟁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 이동통신사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의 결과 2월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담당 부서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책임자	과 장	조주연 (02-2110-1530)
		담당자	사무관	김태균 (02-2110-1533)

참고1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등

1. 개정 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1호)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 ----- ----- ----- ----- ----- -----.
1. <신 설>	1.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

1. ~ 3. (생 략)	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 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 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